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각각 1명씩 행정서기에 서 행정서기보로 하향 조정한 직급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설치한 가맹유통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9일까지에서 2025년 9월 9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하여 사무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렬 정원으로 전환하며,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일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제처,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00.00. ~ 00.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정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정보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2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삭제한다.

21. 지역 소비자 시책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22. 지역 소비자 시책 관련 협의체 운영
23.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시책에 대한 평가와 모범사례 발굴·보급
2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제2항 중 “지식산업감시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가맹유통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가맹유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각 과장은 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8명”을 “13명”으로, “4급 2명”을 “3급 또는 4급 5명, 4급 2명”으로 한다.

제18조는 삭제한다.

별표 2와 별표 2의2는 별지와 같이 한다.

총리령 제164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3년 9월 9일”을 “2025년 9월 9일”로, “2023년 9월 10일”을 “2025년 9월 10일”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2023년 9월 9일”을 “2025년 9월 9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485
정무직 계	2
위원장(장관급)	1
부위원장(차관급)	1
별정직 계	1
비서(6급 상당)	1
일반직 계	482
고위공무원단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3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1
서기관	30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비서)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8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158
전산사무관	5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8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2
행정주사	121

행정주사·시설주사 또는 사서주사	3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
전산주사	3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30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
전산주사보	4
행정서기	22
전산서기	1
행정서기보	3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
운전서기보	1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5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담당)	1
전문경력관 다군(속기 담당)	1
전문경력관 라군(속기 담당)	2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485
정무직 계	2
위원장(장관급)	1
부위원장(차관급)	1
별정직 계	1
비서(6급 상당)	1
일반직 계	482
고위공무원단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3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1
서기관	30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비서)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8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165
전산사무관	5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8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2

행정주사	114
행정주사·시설주사 또는 사서주사	3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
전산주사	3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30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
전산주사보	4
행정서기	21
전산서기	1
행정서기보	4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
운전서기보	1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5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속기 담당)	1
전문경력관 다군(속기 담당)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심판담당관) ① ~ ③ (생략)	제6조(심판관리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경쟁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④ ----- -----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1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⑤ 기업거래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⑤ ----- -----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2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1.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⑥·⑦ (생략)

제7조(기획조정관) ① (생략)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정보화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⑦ (생략)

제10조(소비자정책국) ①·② (생략)

③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0. (생략)

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설>

<신설>

<신설>

⑥·⑦ (현행과 같음)

제7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정보화담당관
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소비자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0. (현행과 같음)

21. 지역 소비자 시책의 기본계획 수립 · 시행

22. 지역 소비자 시책 관련 협의체 운영

23.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시책에 대한 평가와 모범사례 발굴 · 보급

2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

④·⑤ (생략) ⑥ 특수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생략) <u>17. 지역 소비자 시책의 기본계획 수립·시행</u> <u>18. 지역 소비자 시책 관련 협의체 운영</u> <u>19.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시책에 대한 평가와 모범사례 발굴·보급</u> 제11조(시장감시국) ① (생략) ② 시장감시국에 서비스업감시과·제조업감시과·지식산업감시과·약관특수거래과 및 전자거래감시팀을 두며, 서비스업감시과장·제조업감시과장·약관특수거래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u>지식산업감시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u>,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⑦ (생략)	<u>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u>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16.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제11조(시장감시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지식산업감시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 ----- -----. ③ ~ ⑦ (현행과 같음)
--	--

만, 총괄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
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
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으로 보할 수 있다.

③ ~ ⑧ (생략)

제15조(부산·광주·대전 및 대구
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 (생
략)

② 부산·광주·대전 및 대구지
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총
괄과·경쟁과·소비자과 및
하도급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총
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
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략)

제17조(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
무원의 정원) ① 공정거래위
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정
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제22조제1항단서에 따

-----상호
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
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5조(부산·광주·대전 및 대구
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 (현
행과 같음)

② -----

-----각 과장은
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1항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4명(6급 6명, 7급 8명),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9급 2명)과 그 밖의 정원 중 8명(4급 2명, 5급 3명, 6급 1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⑤ (생략)

-----10
퍼센트-----
-----.

② -----

-----10퍼센트-----

-----.

③ -----

-----13명(3·4급 5명, 4급 2명)-----

-----.

④·⑤ (생략)

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심판관리관을 말한다.	<삭 제>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객지원담당관·특수거래정책과장·약관특수거래과장 및 경제분석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삭 제>
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삭 제>
총리령 제164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총리령 제164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생략)	제1조(시행일) ① (현행과 같음)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하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행정서기보 1명 및 별표 3의2의 행정서기보 1명은 각각 2023년 9월 9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9월 1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 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행정서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하향 조정 한 지급의 존속기한) ----- ----- ----- -----2025년 9월 9일----- 2025년 9월 10일----- -----

기 1명 및 별표 3의2의 행정서 기 1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서울지방공정거래 사무소 가맹유통팀은 <u>2023년 9</u> <u>월 9일까지</u>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② (생 략)	----- -----.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 ----- -----<u>2025년 9</u> <u>월 9일</u>-----.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② (현행과 같 음)
---	---